

2025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25. 4.

감사위원회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고 대상

○ 기 간 : 2025. 1. 1. ~ 3. 31.(2025년 1분기)

○ 대 상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권익위 국민신문고 이첩

- 온라인(시장핫라인), 오프라인(우편·방문 등)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이첩 공익제보

☐ 접수 결과

○ 2025년 1분기 총 42건 접수

[표 1] 2025년 1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단위 : 건)

접 수 창 구	합 계	1월	2월	3월	
공 익 제 보 지 원 센 터	공직자비리신고	21	4	8	9
	공 익 신 고	19	9	9	1
	부 정 청 탁	1	-	1	-
	퇴직공무원특혜	1	-	1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 민 신 문 고	-	-	-	-
합	계	42	13	19	10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단위 : 건)

경로	합계	공익제보지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PC/모바일)	오프라인 (우편/방문/팩스)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이첩
접수건수	42 (100%)	40 (95.2%)	2 (4.8%)	-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

□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본청 소관 사무 제보 16건(38.1%), 본부/사업소 소관 3건(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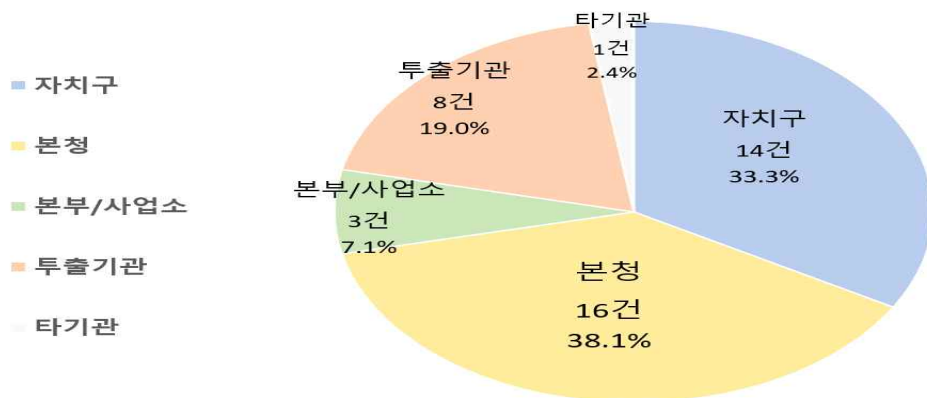
- 본청 공익신고 9건, 부패신고 7건
- 본부/사업소 공익신고 2건, 부패신고 1건

○ 그 외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 8건(19%), 타기관 1건(2.4%)

- 시 투자출연기관 공익신고 1건, 부패신고 7건
- 서울시청 외 타기관(정부공단) 소관 부정청탁신고 1건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 14건(33.3%)

- 공익신고 7건, 부패신고 7건



3. 공익제보 분류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42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27건

[표 3]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단위 : 건)

총 계	공익제보 해당 27건(64.3%)		일 반*
	부패신고	공익신고	
42 (100%)	20 (47.6%)	7 (16.7%)	15 (35.7%)

*일 반 : 공익제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내용상 소관 기관 감사실의 검토가 필요하여 소관 기관 이첩한 민원

※ 조례상 ‘공익제보’의 범위

구 분	개 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판례)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93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직무수행 기본자세 등),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4. 공익제보 내용 분석

□ 공익제보 세부내역(총 27건)

○ 부패신고 : 20건

[표 4]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 분	소관기관	건 수	내 용
업 무 부 적 정	본 청	1	업무 추진 과정 중 부당행위
	본 부 · 사 업 소	2	
	자 치 구	1	
	투 자 출 연 기 관	-	
	타 기 관	-	
	소 계	4	
불 공 정 행 위	본 청	4	입찰이나 채용,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본 부 · 사 업 소	-	
	자 치 구	-	
	투 자 출 연 기 관	3	
	소 계	7	
복 무	본 청	1	초과근무/출장 수당 부정수령 등
	본 부 · 사 업 소	-	
	자 치 구	2	
	투 자 출 연 기 관	-	
	소 계	3	
기 타	본 청	3	공직자 외의 부패행위(공무원 아닌 자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본 부 · 사 업 소	1	
	자 치 구	2	
	투 자 출 연 기 관	-	
	소 계	6	
총	계	20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 포함

○ 공익신고 : 7건

[표 5]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 분	소관기관	건 수	내 용
의 료 법	자 치 구	2	무면허 의료기술 등
건 축 법	자 치 구	1	임차건물 건축법 위반
상 표 법	투 자 출 연 기 관	1	가짜명품 판매
영 유 아 보 육 법	자 치 구	1	원아 초과보육
장 애 인 활 동 법	자 치 구	1	장애인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청 원 경 찰 법	본 청	1	청원경찰 복무위반
총 계		7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 적용 법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

5. 처리 및 조치 결과 (2025. 3. 31.기준)

☐ 처리 내역(총 42건)

[표 6] 접수제보 처리 현황

(단위 : 건)

총 계	처리완료(6)		내부종결(15)			진행중
	처 분 (조치)	개선 등	해당없음	민원안내 (보완요구, 제보요건 안내 등)	취 하	
42	4	2	2	4	9	21

※ 개선 : 구두경고, 주의촉구, 개선약속,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민원안내 : 증거 미첨부·피신고자 불특정으로 보완요구 등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 처분(조치) 내역

[표 7] 공익제보 조치 결과(요구 포함)

(단위 : 건)

연 번	신고구분	신고 내용	처분기관	조치 내역
1	공 익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자치구	징계
2	부 패	공무원 복무위반	자치구	환수, 징계
3	부 패	직원 복무규정 위반 업무처리	투자출연기관	징계
4	공 익	가짜명품 판매	투자출연기관	단속, 고발